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대학”라 한다.)의 학생단체활동(이하 “학생활동”이라 한다.) 및 교내외 감염병과 관련하여 각 중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과 구성원이 취해야 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단체활동”이란 대학 또는 학과가 인정하는 단체의 재학생 5명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외 활동을 말한다.
- ② “지도교수”란 학생활동 시 학생지도의 책임을 맡은 대학의 교원을 말하며 담임교수, 동아리 지도교수 등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 ③ “책임지도교수”란 학생활동이 대규모이거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지도교수를 선임하고 당해 행사 학생지도의 총괄을 맡는 교원을 말한다.
- ④ “안전사고”란 다음의 요인으로 인해 학생활동 참가자의 생명, 신체, 재산과 대학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1. 자연요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또는 국가에서 정한 감염병등으로 인한 피해
- ⑤ “안전관리”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⑥ “주관기관”이란 학생활동 시 안전관리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⑦ “지원기관”이란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자원 및 전문적 지식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⑧ “행사주체”란 학생활동을 주최·주관하는 단체 또는 학생회를 말한다.

제3조 (대학 등의 책무) ① 대학 또는 주관기관은 학생활동의 안전사고로부터 참가자를 보호 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하며 발생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안전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및 보고 체계를 갖춘다.

제4조 (학생단체활동의 주관기관 및 책임지도교수의 지정) ① 대학은 학생단체 활동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처가 당연 지정 된다.

1. 신입생오리엔테이션
2. 성화제
3. 한울제
4. 춘계연합 모꼬지

- 5. 총학생회 해외비전트립
- 6. 총학생회 국내단기선교 또는 봉사 활동

② 춘계연합 모꼬지의 주관기관은 학생처이며 학생활동의 특성상 학과장이 책임 지도한다.

제5조 (주관기관의 역할과 권한) ① 주관기관은 학생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행사의 경우 별표1의 기준, 교외행사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행사주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행사주체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책임지도교수 및 지도교수의 역할과 권한) ① 책임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는 학생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내행사의 경우 별표1의 기준, 교외행사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행사주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② 책임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는 행사주체의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행사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춘계연합모꼬지의 경우 학생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기관의 역할과 권한) ① 지원기관은 학생활동 시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관기관·책임지도교수·지도교수 또는 행사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

② 지원기관은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책임지도교수·지도교수 또는 행사주체에 해당 상황을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학생활동의 취소 또는 연기를 주관기관·책임지도교수·지도교수 또는 행사주체에 건의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교수의 배정)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지도교수의 배정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학생활동의 알림) ① 제4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행사의 주관기관은 각 학과가 되며 각 학과는 학생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업무연락을 통해 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② 동아리 학생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수가 주관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며 학생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서식 1에 의거 학생처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감염병 발병 시의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 지정) ① 대학은 학내·외의 감염병 발병으로 질병의 확산이 우려 될 경우 총무처를 주관기관으로 당연 지정한다.

② 상기항의 주관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교무처와 학생처, 대학원교학과, 교역처, 생활관은 지원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제11조 (감염병 발병 시 주관기관의 역할과 권한) ① 학내·외의 감염병 발병 시 주관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발병 시 구성원에 관한 신속한 대처
2. 교내외 방역
3. 소독(위생)시설 비치
4. 감염병에 관한 정보 전파 및 지원기관과의 공유
5. 감염병 발생환자의 정보 파악 및 격리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전파

7. 감염병대책위원회(가칭)의 소집
 8. 긴급환자의 후송
 9. 감염 의심자의 격리
 10. 보건당국과의 연결
 11.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건의
- ② 주관기관은 감염병예방, 퇴치를 위하여 각 부처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부처 및 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 발병 시 지원기관의 역할과 권한) ① 학내·외의 감염병 발병 시 지원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감염병의 발병 시 구성원에 관한 신속한 전파 협조
 2. 교내외 방역 협조
 3. 소독(위생)시설의 비치 협조
 4. 감염병에 관한 정보 전파 및 지원기관과의 공유 협조
 6. 감염병 발생환자의 정보 파악 및 격리 협조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전파 협조
 8. 감염병 관련 정보의 신속한 보고
 9. 긴급환자의 후송 협조
 10. 감염 의심자의 격리 협조
 11.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건의 협조
- ② 지원기관은 주관기관의 기능을 보조하며 필요한 경우 감염병대책위원회(가칭)의 소집을 주관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 (감염병대책위원회의 구성) 감염병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역처장, 대학원장, 기획처장, 생활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③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학과장, 기획과장, 생활관부관장, 총학생회장, 원우회장은 배석 할 수 있다.

제14조 (감염병대책위원회의 역할) 감염병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염병확산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 ② 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학사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 ③ 감염병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예산 건의
- ④ 그 밖의 주관기관의 요청 안전에 관한 심의 및 결의

제15조 (학생활동 중 안전사고의 조치와 보고) 학생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행사주최자와 지도교수는 선 조치 후 주관기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주관기관은 학생처에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 (사고의 처리) 학생활동 시 안전사고의 상황에 따라 학생처는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사고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감염병등에 관한 상황은 총무

처에서 전담대책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

[별표1]

교내 학생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담 당	학 과 장 (지도교수)	학생처장

장소		
단계	점검(교육) 내용	확인
사전 점검	행사장소의 비상대피로는 확보 되었는가?	
	행사 장소의 수용인원은 적정한가?	
	행사 장소 중 안전에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가 있는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적절히 배정 하였는가?	
	안전대피를 위한 물품(호루라기, 경광봉, 조끼 등)을 갖추었는가?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 하였는가?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 되었는가?	
	화재 시 대피 안내도를 확보 하였는가?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대책은 확보 되었는가?	
사후 보고	행사 참석자에게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였는가?	
	행사 중 적절한 안전요원을 실제로 배치 운영 하였는가?	
	행사전 안전교육(대피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실시 하였는가?	
	조명, 음향 등의 사용 중 전기 합선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 하였는가?	

화재예방		
단계	점검(교육) 내용	확인
사전 점검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는가?	
	안전대피를 위한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대피계획을 훈련 또는 설명 하였는가?	
	난방기구, 전기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사후 보고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는가?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는가?	

체육행사

단계	점검(교육) 내용	확인
사전 점검	체육활동 장소의 안전위해 요소는 없는가?	
	체육기구는 안전한가?	
	심판 및 운영진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가?	
	체육활동 장소는 적정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가?	
	응급처치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 하고 있는가?	
사후 보고	경기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는가?	
	응급처치를 위한 인력을 배치 하였는가?	

[별표2]

춘계 연합 모교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담당	학과장 (지도교수)	학생처장

***안전점검조치 후 결과를 학생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전 안내

단계	점검사항	확인
사전 프로그램	학부모 안내문은 발송하였는가?	
	학과주관 프로그램을 사전에 확인(안전과 직결된 프로그램 여부 확인)하였는가?	
	행사 중 상주교원 확인, 숙박기간 내 교원 상주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학생안전 교육(교내 과별 모임에서)을 실시 하였는가?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였는가?	

*교통안전

단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 하였는가?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앞 타이어 재생 활용은 불법)하였는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정상 작동을 확인 하였는가?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는가?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확인하였는가?	
		차량속도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가?	
		운행 중 전화 금지를 주지시켰는가?	
학생 교육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는가?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안내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을 구비하였는가?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약품을 준비하였는가?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메모	
		유사시를 위해 학교, 지역 소방서(119), 지역경찰서(112) 연락	

	처 확보	
--	------	--

***숙소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한지, 정원을 넘어서는지 확인 하였는가?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인증 사실을 확인 하였는가?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도착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화재예방[숙소]**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2층 이상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 하였는가?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 하였는가?	
도착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보 하였는가?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 하였는가?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하였는가?	

***식중독 예방**

단계	점검사항	확인
행사중	식당청결 상태를 확인 하였는가?	
	조리사 자격증을 확인 하였는가?	
	식중독 관련 보험가입을 확인 하였는가?	
	화재 시 확인 대피로를 확인 하였는가?	
도착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보 하였는가?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 안내를 하였는가?	
	소화기 및 완강기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하였는가?	

*행사안전 예방[강당]

단계	점검사항	확인
행사중	행사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주의사항을 공지 하였는가?	
	행사장 대피안내요원을 배치 하였는가?	
	음향, 조명 및 전기 시설을 확인 하였는가?	
	화재 시 대피 매뉴얼을 확인 하였는가?	
환자 발생	의무실 위치를 사전 숙지 하였는가?	
	응급처치 매뉴얼을 확인 하였는가?	
	응급환자 수송 방안을 수립 하였는가?	
	숙소 주변 응급실을 확인 하였는가?	
	응급조치 유자격자의 배치를 확인 하였는가?	
	관련 보험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별표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행사전 안내

단계	점검사항	확인
안내 및 프로그램	학부모 안내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하였는가?	
	학생처주관 프로그램 확보를 확인 하였는가?	
	오리엔테이션 장소 상주교원의 명단을 확인 하였는가?	
	학생안전 교육안내(교내-스텝)를 실시하였는가?	

*교통안전

단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 하였는가?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앞 타이어 재생 활용은 불법) 하였는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정상 작동을 확인 하였는가?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는가?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	
	운전자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확인하였는가?	
		차량속도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는가?	
		운행 중 전화 금지를 주지시켰는가?	
학생 교육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는가?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안내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을 구비하였는가?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약품을 준비하였는가?	
	연락망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메모 유사시를 위해 학교, 지역 소방서(119), 지역경찰서(112) 연락처 확보

*숙소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절한지, 정원을 넘어서는지 확인 하였는가?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인증 사실을 확인 하였는가?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도착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화재예방[숙소]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2층 이상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하였는가?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하였는가?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 하였는가?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 하였는가?	
도착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보 하였는가?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 하였는가?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하였는가?	

*식중독 예방

단계	점검사항	확인
행사중	식당청결 상태를 확인 하였는가?	
	조리사 자격증을 확인 하였는가?	
	식중독 관련 보험가입을 확인 하였는가?	
	화재 시 확인 대피로를 확인 하였는가?	
도착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보 하였는가?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 안내를 하였는가?	
	소화기 및 완강기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하였는가?	

*행사안전 예방[강당]

단계	점검사항	확인
행사중	행사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주의사항을 공지 하였는가?	
	행사장 대피안내요원을 배치 하였는가?	
	음향, 조명 및 전기 시설을 확인 하였는가?	
	화재 시 대피 매뉴얼을 확인 하였는가?	
환자 발생	의무실 위치를 사전 숙지 하였는가?	
	응급처치 매뉴얼을 확인 하였는가?	
	응급환자 수송 방안을 수립 하였는가?	
	숙소 주변 응급실을 확인 하였는가?	
	응급조치 유자격자의 배치를 확인 하였는가?	
	관련 보험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별표4]

학생활동 지도교수 배치표

학생활동 구분	책임지도교수	지도교수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학생처장	학과교수
춘계연합모꼬지	학과장	학과교수, 교목
한 울 제	학생처장	학과교수
성 화 제	학생처장	학과교수
총학생회 해외비전트립	학생처장	인솔교수
총학생회 국내단기선교	학생처장	인솔교수
동아리활동	동아리지도교수	
학과 학생행사	학과장	학과교수
학과별, 학년별 모꼬지	학과장	담임지도교수, 인솔교수

※ 학생처장은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학생활동에 대하여 그 규모에 따라 상기행사에 준하여 책임지도교수 및 지도교수를 선임 할 수 있다.